

# '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---



관세청

Korea Customs Service

# 목 차

① 시내보세판매장(면세점)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시행	p.1
②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본격 시행	p.2
③ 먹거리·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	p.3
④ 커피,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	p.4
⑤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한시적 확대	p.5
⑥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% 인하 적용기간 연장	p.6
⑦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	p.7
⑧ 휘발유,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추가 인하	p.8
⑨ RCEP 등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집행기준 마련	p.9
⑩ RCEP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서식 개정	p.10
⑪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 품목 수 제한 폐지	p.11
⑫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RCEP에도 확대 시행	p.12
⑬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	p.13
⑭ 국민안전과 밀접한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재지정	p.14

# 1 시내보세판매장(면세점)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시행

(보세산업지원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- <u>외국인이 국내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시내보세판매장(면세점)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구매 가능토록 허용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물품) 국산품 *타법령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물품 및 환급대상 내국물품 제외</li> <li>• (판매한도) 없음</li> <li>• (판매대상) 해외 거주 외국인 *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외국인</li> <li>• (배송지) 외국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면세점의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한 국산품(K-Brand) 수출 증대

○ **【시행일】** 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된 업체별로 6월부터 사업 시행

\* 「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운영 지침」 제정

## ②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본격 시행

(전자상거래통관과, 042-481-783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<u>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등록의무 대상요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<u>‘통신판매업자*’로 신고한 자 중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,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</li> </ul> </li> <li>② <u>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</u></li> </ul> </li> <li>※ 다만,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격이 총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가능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

○ **【시행일】** '21. 7. 1. ('22. 6. 30. 등록의무 유예기간 종료)

\* 「관세법」 개정

### 3 먹거리·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할당관세 대상품목 ○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○ 돼지고기, 밀, 밀가루, 대두유, 해바라기씨유, 페로크로뮴, 망간, 인산 이암모늄, 전해액 첨가제
<input type="checkbox"/> 할당관세율 ○ 나프타 제조용 원유 (0.5%)	<input type="checkbox"/>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 ○ 나프타 제조용 원유 (0.5→0%)
<input type="checkbox"/> 조정관세 대상 품목 ○ 나프타 (0.5%)	<input type="checkbox"/> 조정관세 대상품목 종료 ○ <삭 제> (기본세율 0% 적용)
<input type="checkbox"/> 할당관세 적용기간 ○ 계란 가공품, 요소('22년 6월 30일)	<input type="checkbox"/>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○ 계란 가공품, 요소('22년 12월 31일)
<input type="checkbox"/> 할당관세 한계수량 ○ 사료용 근채류(70만톤)	<input type="checkbox"/> 할당관세 한계수량 확대 ○ 사료용 근채류(100만톤)

○ **【기대효과】** 할당관세(0% 등 저세율) 적용품목 신규 지정 및 적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관세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기여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6. 22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- \*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」 개정
- 「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」 개정

#### 4 커피,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6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커피, 코코아두 등*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</p> <p>* HS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(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) 및 커피의 껍데기          · 껍질과 웨이스트(waste)          HS 제1801호 코코아두(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)          HS 제1802호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,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(waste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면제</p>

- **【기대효과】** 커피,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국민 기호식품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
- **【시행일】** '22. 6. 28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  - \*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개정

## 5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한시적 확대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6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에서 제외 → 과세하고 있음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면세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단순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포장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물가안정 지원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\*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개정

## 6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% 인하 적용기간 연장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% → 3.5%로 인하하여 적용</p> <p>○ 적용기간: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</p>	<p>□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</p> <p>○ 적용기간: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</p>

- **【기대효과】**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
- **【시행】** 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  - \*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부칙(제31383호) 개정



## 7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</p> <p>○ 킬로그램당 275원 → 193원</p> <p>※ 적용기간: 2022년 7월 31일까지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탄력세율 추가 인하</p> <p>○ 킬로그램당 275원 → <u>176.4원</u></p> <p>※ 적용기간: <u>2022년 12월 31일까지</u> <u>수입신고하는 분</u></p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

○ **【시행】** 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\*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개정

## 8 휘발유,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추가 인하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탄력세율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휘발유 등) 리터당 529원 → 370원</li> <li>○ (경유 등) 리터당 375원 → 263원</li> </ul> <p>※ 적용기간: 2022년 7월 31일까지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탄력세율 추가 인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휘발유 등) 리터당 529원 → <u>332.5원</u></li> <li>○ (경유 등) 리터당 375원 → <u>238원</u></li> </ul> <p>※ 적용기간: <u>2022년 12월 31일까지</u> <u>수입신고하는 분</u></p>

- **【기대효과】**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
- **【시행】** 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  - \*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」 개정

## 9 RCEP 등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집행기준 마련

(국제협력총괄과, 042-481-32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< 신 설 >	<p>□ 연결 원산지증명* 제도 집행기준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역내국으로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</li> <li>● 적용대상 협정: RCEP, 한-아세안 FTA</li> <li>● 작성·발급 유의사항*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협정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방법, 서류보관·제출 및 원산지검증 수인 의무 등</li> </ul> </li> <li>●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(사본으로 대체 가능), 거래사실 입증서류, 수출입 물품간 동일성 확인서류 등</li> </ul> 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체약국간 무역거래 활성화 및 역내 물류기지 활용 지원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5. 18. 이후 연결원산지증명 작성·발급 신청 분부터 적용

\* 「연결 원산지증명 작성·발급 업무 집행 지침」 제정

## 10 RCEP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서식 개정

(국제협력총괄과, 042-481-32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원산지소명서 서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완전생산물품, 세번변경기준, 부가가치기준 등</li> <li>- &lt; 추 가 &gt;</li> </ul> </li> <li>• &lt; 신 설 &gt;</li> </ul> <p>□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서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완전생산물품, 세번변경기준, 부가가치기준 등</li> <li>- &lt; 추 가 &gt;</li> </ul> </li> <li>• &lt; 신 설 &gt;</li> </ul>	<p>□ 원산지소명서 서식 <u>정비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식 <u>정비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<u>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</u></li> </ul> </li> <li>• <u>RCEP 원산지 국가 확인란*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출대상국, RCEP 원산지 국가 등 5개 항목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서식 <u>정비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식 <u>정비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<u>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</u></li> </ul> </li> <li>• <u>RCEP 원산지 국가 확인란*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급물품 연번 등 3개 항목</li> </ul> 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(포괄)확인서 서식에 ‘RCEP 원산지 국가 확인’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RCEP 활용 편의 제고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7. 5.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

\*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

## 11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 품목 수 제한 폐지

(국제협력총괄과, 042-481-32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출자·수입자·생산자 정보, 운송방법, 원산지 신고·증명 등</li> <li>• 원산지결정기준 등 물품명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품의 연번(6란): <u>최대 20개</u></li> </ul> 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<u>개정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물품의 연번(6란): <u>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품목 수 제한(20개) 폐지</u>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품목 수 제한을 폐지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확대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6. 12. 이후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분부터 적용

\* 「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개정

## 12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RCEP에도 확대 시행

(국제협력총괄과, 042-481-32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<u>운영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간이확인 적용 협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세안, 베트남, 중국 및 인도</li> <li>- &lt; 추 가 &gt;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* <u>RCEP 확대</u></p> <p>* 국내 제조·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(관세청장 고시로 지정)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입증서류 제출 간소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간이확인 적용 협정 <u>확대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<u>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</u> : 255개 품목</li> </ul> </li> </ul>

- **【기대효과】** RCEP 활용 수출·제조 기업의 원산지 증빙절차\* 간소화
  - \* (제출서류)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7종 이상 → 국내제조확인서
- **【시행일】** '22. 5. 10.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,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  - \*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

### 13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

(국제협력총괄과, 042-481-32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협정 부속서 3-나(최소 정보 요건) 정보*가 포함된 자율서식</li> <li>* 수출자 이름 및 주소 등 12개</li> <li>• &lt; 추 가 &gt;</li> </ul>	<p>□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<u>권고서식 제정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<u>권고서식</u></li> <li>- <u>협정 부속서 3-나 정보 포함하여 총 14란으로 구성</u></li> </ul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표준화된 서식 활용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작성 편의를 제고하고, 협정 상대국에서 안정적 특혜 적용 지원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5. 18. 이후 RCEP 원산지신고서 작성 분부터 적용

\*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

## 14 국민안전과 밀접한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재지정

(공정무역심사팀, 042-481-788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(5개)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에이치형강, 플랜지, 맨홀뚜껑, 자동차 휠, 연석</li> </ul> <p>※ 지정기간: ~ 2022.7.31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(3개)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에이치형강, 플랜지, 맨홀뚜껑</li> </ul> <p>※ 지정기간: 2022.8.1 ~ 2024.7.31</p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원산지 둔갑 등 국내 유통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국민안전 밀접 품목의 유통이력관리 대상 재지정으로 사회 안전 및 국내 소비자 보호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8. 1.

\* 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